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

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

O	차	
—	A	

제1장 총 칙	
제 1 조 [목적]	
제2조 [명칭 및 소개]	
제3조 [신의성실의 의무]	
제4조 [노동조합과의 관계]	
제5조 [사용자의 의무]	
제2장 협의회의 구성	
제6조 [협의회의 구성]	
제7조 [의장]	
제8조 [간사]	
제9조 [위원의 임기]	
제10조 [위원의 신분]	
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및 의무	
제11조 [사용자위원 선출]	
제12조 [근로자위원 선출]	
제13조 [사용자·근로자위원 의무]	
제4장 협의회의 운영	
제14조 [협의회 회의]	
제 1 5 조 [회의소집]	
제 1 6 조 [경족수]	
제17조 [회의의 공개]	
제 1 8 조 [비밀유지]	
제19조 [회의록 비치]	
제5장 협의회의 임무	
제20조 [협의사항]	
제 2 1조 [의결사항]	
제 2 2 조 [보고사항]	
제23조 [의결사항 등의 공지]	
제24조 [의결사항의 이행]	
제 2 5 조 [임의중재]	б

제6장 고충처리	
제 2 6 조 [고충처리위원회]	
제27조 [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]	
제28조 [고충의 처리]	
제 2 9 조 [상담실운영]	
제 3 0 조 [대장비치]	
제7장 보 칙	
제 3 1조 [대표위원의 권한위임]	
제 3 2 조 [신고의무사항]	
제 3 3 조 [운영세칙]	
제34조 [규정 외의 사항]	
제8장 부 칙	

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거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란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)

노사협의회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 내에 설치하며, 명칭은 "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"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신의성실의 의무)

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.

제4조(노동조합과의 관계)

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제5조(사용자의 의무)

-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.

제2장 협의회의 구성

제6조(협의회의 구성)

-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근로자위원"이라 한다)은 근로자가 선출하되, 근로자의 과반수로
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사용자위원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의장)

-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 의장으로 한다.
-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

-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.
-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 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(위원의 신분)

- ① 위원은 비상임·무보수로 한다.
- ② 사용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.

제3장 사용자·근로자위원 선출 및 의무

제11조(사용자위원 선출)

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사용자위원"이라 한다)의 선출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할만한 적임자를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임한다.

제12조(근로자위원 선출)

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근로자위원"이라 한다) 선출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근로 복지 증진에 기여할만한 적임자를 근로자 중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.

제13조(사용자·근로자위원 의무)

선임된 사용자·근로자 위원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협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여할 의무가 있다.

제4장 협의회의 운영

제14조(협의회 회의)

① 회의는 정기·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분기 첫째 주에 개최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협의회 공동의장의 결정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임시회의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회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.

제15조(회의소집)

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·장소·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정족수)

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회의의 공개)

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.

제18조(비밀유지)

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비밀의 범위는 매 회 의에서 정한다.

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19조(회의록 비치)

-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•비치한다.
- 1. 개최 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
- 3.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
- 4. 기타 토의사항
-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한다.
-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.

제5장 협의회의 임무

제20조(협의사항)

-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.
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
 근로자의 채용·배치 및 교육훈련
 근로자의 고충처리
 안전, 보건,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
 인사·노무관리의 제도 개선
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·재훈련·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
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
 임금의 지불방법·체계·구조 등의 제도 개선
 신기계·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
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
 종업원지주제(從業員持株制)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
 지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
 근로자의 복지증진
- 14.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
- 15.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- 16.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
-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.

제21조(의결사항)
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

2.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
- 3.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
- 4.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
제22조(보고사항)

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, 설명하여야 한다.

- 1.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
- 2. 분기별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- 3.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
- 4. 산학협력단의 경제적, 재정적 상황

제23조(의결사항 등의 공지)

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24조(의결사항의 이행]

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5조(임의중재)

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(仲裁機構)를 두어 해결하거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.

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.

1.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

- 2.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
- 3.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고충처리

제26조(고충처리위원회)

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제27조(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)

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 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한다.
-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

제28조(고충의 처리)

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.

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 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9조(상담실운영)

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관리부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30조(대장비치)

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.

제7장 보 칙

제31조(대표위원의 권한위임)

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32조(신고의무사항)

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.

제33조(운영세칙)

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.

제34조(규정 외의 사항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제8장 부 칙

1.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서식 제 1 호】노사협의회 위원, 고충처리 위원 명단 【별지서식 제 2 호】노사협의회 회의록 【별지서식 제 3 호】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【별지서식 제 4 호】고충처리 면담서 【별지서식 제 1 호】 노사협의회 위원, 고충처리 위원 명단

사 용 자			근 로 자				
직 책	성명	날 인	직 책	성명	날 인		
	사 용 자			근 로 자			
직 책	성명	날 인	직 책	성명	날 인		

노사협의회 위원, 고충처리 위원 명단

노사협의회 위원

고충처리 위원

년 월 일

【별지서식 제 2 호】 노사협의회 회의록

	제	차 (정기	· 임시)	노사협의회 회	회의록
회 의	일 시				
회 의	장 소				
보고	사 항				
협 의	사 항				
의 결	사 항				
의결된 이행에 괸	사항 안한 사항				
기타 참	고사항				
참석 위원 서명 간 사		사용자 성명 	서 명	근 성 명	로 자 <u>서 명</u>

접 수 정 수		고 충 인	인			히 시	위위	
접 수 번 호	접 수 일 자	성	명	소속부서	고 충 내 용	처 리 결 과	회 신 일 자	위 원 확

고충처리 면담서				
상담 일자				
소속 및 성명				
고 충 내용				
처리 결과				
회신 일자				
	상 담 위 원 : (인)			

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